

2020년도 제22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9. 23.(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09호)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정현순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820건(안건번호 제2020-122451호~12370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22451호~122462호는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23673호~123704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임.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 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73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7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024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2020-51380호~52403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7개, 총 1,024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정현순 전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2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0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정현순 전문위원: 제1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 6쪽의 민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10쪽의 민원인 회사명, 카페명, 민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파일명, 11쪽의 민원인 회사명, 서체명, 폰트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19쪽~3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정현순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후지 TV’, ‘영국 BBC one’, ‘Microsoft Corp.’, ‘미국 Showtime’,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코리아(유)’, ‘(주)제이앤씨 미디어그룹’,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식회사’, ‘Netflix’,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씨나몬(주)홈 초이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최승수, A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정현순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82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0-122451호~123704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22451호~12246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 ‘▲▲▲ ▲▲’, ‘▲▲▲ ▲’, ‘▲▲ ▲▲▲ ▲▲ ▲▲▲’, ‘▲ ▲▲ ▲▲▲’, ‘▲▲ ▲▲ ▲▲▲ ▲▲▲▲’, ‘▲▲▲▲▲ ▲▲▲’, ‘▲▲ ▲▲▲▲ ▲▲▲’, ‘▲▲▲▲▲’를 30 포인트 내지 110 포인트에 각각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임. 총 게시물 수는 12건임.

(안전번호 제2020-122451호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50 포인트에 판매중임. 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116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122452호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40 포인트에 판매중임. 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46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만화 이미지 내에 “▲▲ ▲▲ ▲▲▲▲▲▲▲ ▲▲▲▲ ▲▲▲▲”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음.

(안전번호 제2020-122453호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110 포인트에 판매중임. 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87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122454호, 122455호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50 포인트에 판매중임. 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123화와 번외

편을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만화 이미지 내에 “▲▲▲▲▲▲▲▲▲▲
▲▲▲▲▲”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 ▲▲ ▲▲ ▲▲▲▲▲
▲▲▲▲ ▲▲▲▲▲▲▲▲▲▲”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음.

(안전번호 제2020-122456호, 122457호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30 포인트에 판매중임. 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53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122458호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30 포인트에 판매중임. 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51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만화 이미지 내에 “▲▲ ▲▲ ▲▲▲▲▲▲▲▲ ▲▲▲▲▲
▲▲▲▲▲”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음.

(안전번호 제2020-122459호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30 포인트에 판매중임. 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28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만화 이미지 내에 “▲▲ ▲▲ ▲▲▲▲▲▲▲▲ ▲▲▲▲▲
▲▲▲▲▲”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음.

(안전번호 제2020-122460호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60 포인트에 판매중임. 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358.5화와 특별편을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122461호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60 포인트에 판매중임. 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94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122462호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70 포인트에 판매중임. 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100화와 EXTRA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 수, 특이사항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

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22451호~12246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가결함이 타당함.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122451호~12246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만화 불법복제물들임.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122451호~12246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정현순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23673호~123704호는 ▲▲▲▲▲▲, ▲▲▲▲▲, ▲▲, ▲▲, ▲▲▲, ▲▲, ▲▲ ▲▲, ▲▲▲▲▲▲▲▲ 등 오픈마켓 등에서 '☼☼☼☼'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 ☀☀☀’를 구매해서 설치할 경우 우리나라 방송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 다만, 동북아권 방송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우므로 스트리밍이 원활하지만, 유럽의 경우 시차가 발생하여 스트리밍이 다소 지연됨.

해당 기기는 여러 개의 방송을 합법적으로 수신한 다음에 다시 재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저작권법은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해당 안건과 유사한 기기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기기의 판매를 통해 이 사건 기기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침해행위를 방조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가 불법복제물은 아니하므로,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정보’라는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시정권고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과 같이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판매자가 기기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침해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본 건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본 건 기기 제작자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및 본 건 기기 구매자들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저작권 등 침해 방조에 해당함. 본 건 판매자는 본 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 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에 상정된 총 75개의 판매 게시물은 '☼☼ ☼☼☼'와 '☆☆ ☆☆☆'를 함께 판매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123675호 게시물에서 판매하고 있는 '☆☆ ☆☆☆'를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님이 직접 시연해보도록 하겠음.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 ☆☆☆'를 시연하면서)전원을 켜면 설치 화면이 나오지만 현재는 설정이 완료되어 실시간 방송이나 영화를 바로 볼 수 있음.
- C 위원: '☆☆ ☆☆☆'를 구매하여 모니터에 연결하면 해당 화면이 나온다는 말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IP를 잡고 난 후, 해당 화면이 나옴.
- A 위원: '☆☆ ☆☆☆'는 중국에서 제작하여 수입된 것인데, 현재 화면에는 우리말로 표시되어 나옴.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기기 설정 시 한국어로 언어설정을

하면 우리말로 표시됨. 중국어를 번역하여 우리말로 표시되어서 인지 보시는 바와 같이 '☆☆ ☆☆☆' 아이콘명이 '▲▲ ▲▲▲▲', '▲▲▲▲ ▲▲', '▲▲▲▲', '▲▲ ▲▲', '▲▲' 등 정확하지 않는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음. 다시 설정화면으로 돌아가서, 리모콘으로 '6868' 코드를 입력하면 전용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됨.

- 정현순 전문위원: 그 코드를 입력하면 앱들이 다운되는 것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그러함.

- 정현순 전문위원: 그 코드는 제품을 구매하면 함께 제공되는 것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유튜브에서 '☆☆ ☆☆☆ 설정 방법'을 검색하면 영상 내에 해당 코드번호를 입력하라고 안내하고 있음.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

- C 위원: 전 화면에서 보여준 앱들은 '☆☆ ☆☆☆'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이 앱들은 정상적인 안드로이드 시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앱들임.

- 정현순 전문위원: 기기를 설치한 후 비밀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앱이라는 말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그러함. 화면 하단에 있는 '▲▲▲▲▲▲▲▲▲▲'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됨.
- C 위원: 불법 앱으로 보임.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회사가 앱을 깔아 놓은 것은 아닌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기기 판매 회사가 미리 앱을 깔아 놓은 것은 아니고 특수한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설치됨. 전용 앱을 실행하게 되면 앱을 통해서 채널이 송출됨. ('☆☆ ☆☆☆'를 연결하여 실시간 방송 중인 JTBC 채널을 보여줌)'▲▲▲▲▲▲'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처럼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
- C 위원: 실시간 방송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그러함. '▲▲▲▲▲▲▲▲' 아이콘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다양한 드라마, 영화 등을 볼 수 있음. '다채로운 연극'의 경우에는 콘텐츠 자체를 DB에 저장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임.
- 정현순 전문위원: VOD 서비스인 것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그러함. 해당 콘텐츠는 실시간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DB 안에 있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임.
- C 위원: VOD 콘텐츠를 모두 DB 구축한 것으로 보임.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그러함. 보시는 바와 같이 '오! 삼광 빌라', '18 어게인' 등 최신 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이전에 심의한 '☼☼ ☼☼☼'와 같은 제조사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동일한 제조사로 추정하고 있음. 기기를 분해하면 부품의 제조사는 다름. 제조사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C 전문위원: 제조사가 동일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작동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그러함. 브랜드가 모두 '▲▲'라고 되어 있어서 동일한 제조사로 추정하고 있음.
- A 위원: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VOD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짐.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다음으로 '▲▲▲▲'은 앱 스토어임.
- A 위원: 앱 스토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은 정해져 있는지? 일반 앱도 사용할 수 있는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스토어 들어가서 유료 앱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불가능함. 넷플릭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설치해 보았음. 넷플릭스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앱을 사용할 수 있어서 무료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었음.
- C 위원: 화면에 표시된 히든 앱은 무엇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히든 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암호를 입력해야함. 암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다양한 앱을 볼 수 있음.
- C 위원: 저 앱을 만든 사람의 수익원은 무엇인지?
- 정현순 전문위원: '☼☼ ☼☼☼'와 '☆☆ ☆☆☆'를 판매하기 위하여 앱을 만든 것 일수도 있음.
- C 위원: 기기 제조사와 앱 제작자가 이익을 쉐어하는 관계로 보여짐.
- 정현순 전문위원: 기기 제조사와 앱 제작자가 동일인 일수도 있음.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마지막으로 '▲▲ ▲▲'은 '▲▲▲▲▲▲▲▲'에서 소장하고 싶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해 놓은 곳임.
- C 위원: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으면 자신의 하드에 저장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해당 기기 안에 저장됨.
- A 위원: 바이러스에 쉽게 걸릴 것으로 보임.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 실제로 사용하는 IP를 설정해야지만 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P를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고 봄.
- C 위원: 해당 화면의 '▲▲'은 무엇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Q&A, 사용설명서 등의 내용이 있음. 중국어, 영어로 되어 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의 수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23673호~12370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기기 판매자가 기기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침해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본 건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및 기기 구매자들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저작권 등 침해 방조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23673호~12370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정현순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22463호~12367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출판물,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SW 'Adobe Premiere Pro CC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2303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SW 'Adobe Premiere

Pro CC 2020'을 무료로 제공중임. 저작권사 'Adobe System Inc.'임. 자동인증이 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체험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매월 24,000원에 이용 가능함.

(영화 '물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3039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물란'을 mkv 파일로 무료로 제공함. 개봉일은 2020. 9. 17.이며, 유역비, 이연걸, 공리, 전자단 등이 출연함. 2020. 9. 20. 기준 누적관객수는 152,044명 현재 극장 상영중임. 무예에 남다른 재능을 지닌 '물란'이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들 몰래 전장에 나가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는 어드벤처 액션 영화임.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3394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160 포인트에 판매함. mkv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2020. 8. 5. 개봉하였으며, 황정민, 이정재, 박정민 등이 출연함. 2020. 9. 20. 기준 누적관객수 4,350,438명이며, 현재 극장 상영 중임. 청부살인 미션 때문에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황정민과 그를 쫓는 무자비한 추격자 이정재의 처절한 추격과 사투를 그린 하드보일드 추격액션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6,390원 구매, 11,000원에 대여 가능함.

(음악 '살았소'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3532호는 음악 '살았소'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20 포인트에 판매중임. '[2020.09.10.]김호중, 마마무, 블루&나플라, Crush[MP3+FLAC]' zip 파일 제공함. 2020. 9. 10. 발매하였으며, 가수는 김호중임. 2020. 9. 20. 기준 멜론 차트 231위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22463호~12367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B,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122463호~ 123672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2463호~12367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2451호~12370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8쪽부터 2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1380호~52403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0. 5.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박정인